

「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심 사 보 고 서
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「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2. 4. 13(금) 평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12. 4. 19(목)
- 다. 상정일자 : 2012. 4. 26(목)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자치행정과장)

- 평창군의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인재육성 기반구축을 위해 교육경비 지원범위를 높여 지원함으로써 관내 학생들의 학력향상도모는 물론 나아가 관내 인구의 전출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기대로 교육환경이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지원범위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.
- 예산지원(안제4조) : 10퍼센트 범위 안에서→25퍼센트 범위에서
 - 해당 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액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장동기)

- 본 조례안은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인재육성 기반 구축을 위해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를 확대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
 -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액의 10% 범위 안에서 지원하던 것을 25%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임.

- 본 조례안은 주5일제 수업 시행에 맞춰 질높은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복지증진을 위해 교육경비 지원액을 상향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 - 다만, 지원액 상향에 따른 예산확보 문제와 함께 일부 학교 편중지원·시설위주 지원 등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사항에 대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, 교육지원청의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(정산)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수정의결

(수정내역)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4조(예산지원) ①군수는 당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액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	제4조 1항 본문 중 “당해년”을 “해당 년”으로, “10퍼센트 범위 안에서”를 “25퍼센트 범위에서”로 한다.	제4조 1항 본문 중 “당해년”을 “해당 년”으로, “10퍼센트 범위 안에서”를 “2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”로 한다..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